

특례적용대상명세서

1. 원천징수의무자

법 인 명		사업자 등록번호	
사 업 장 소 재 지	(전화번호:)		

2. 과세특례 적용대상명세서

성 명	직 책	주민등록번호	주식매수 선택권 행사일	주식매수 선택권 행사이익	자회사 임직원 여부		
					해당여부	자회사 법인명	자회사 사업자 등록번호
					[]		
					[]		
					[]		
					[]		
					[]		
					[]		

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6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4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적용대상명세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원천징수의무자 (서명 또는 인)

세무서장 귀하

작성방법

-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으로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받는 대신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(2025년도 이후에는 금융투자소득세)로 신고·납부하려는 경우에 작성합니다.
- "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"란은 특례적용신청서(별지 제6호의5서식을 말합니다)의 "④ 행사이익"을 적습니다.
- 벤처기업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인 경우 자회사 임직원 여부에 체크[√] 후 해당 자회사의 법인명과 사업자등록번호를 추가로 기재해야 합니다.